

제311회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15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12년11월26일(월)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예산안(계속)
 - 가. 환경부 소관
 - 나. 기상청 소관
 - 다. 고용노동부 소관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3. 201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가. 환경부 소관
4.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4.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5.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6.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계속)
- 2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계속)
- 3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증인 고발의 건

심사된 안건

37. 증인 고발의 건	3
1. 2013년도 예산안(계속)	4
가. 환경부 소관	
나. 기상청 소관	
다. 고용노동부 소관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3. 201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4
가. 환경부 소관	
4.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 · 김성찬 · 김정록 · 강창일 · 민홍철 · 이한성 · 안홍준 · 이만우 · 강은희 · 주영순 의원 발의)(계속)	6
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수미 · 장하나 · 신경민 · 김용익 · 홍영표 · 박원석 · 최동익 · 최민희 · 김경협 · 한정애 의원 발의)(계속)	6
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 · 정희수 · 이만우 · 박창식 · 송영근 · 김을동 · 강은희 · 김세연 · 정갑윤 · 신성범 · 여상규 의원 발의)(계속)	6
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8.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 · 김대환 · 고희선 · 이만우 · 박창식 · 김현숙 · 신의진 · 나성린 · 손인춘 · 이병석 의원 발의)(계속)	6
9.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 · 이만우 · 김춘진 · 李宰榮 · 김재원 · 김성찬 · 서용교 · 이종진 · 류지영 · 황진하 의원 발의)(계속)	6
10.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 · 나성린 · 손인춘 · 은수미 · 이만우 · 홍지만 · 강기윤 · 송영근 · 최봉홍 · 주영순 의원 발의)(계속)	6
1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1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수미 · 장하나 · 신경민 · 김용익 · 홍영표 · 박원석 · 최동익 · 최민희 · 김경협 · 한정애 의원 발의)(계속)	6
1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 · 최규성 · 김성곤 · 박지원 · 오제세 · 주승용 · 김우남 · 이윤석 · 백재현 · 정세균 의원 발의)(계속)	6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안규백 · 강창일 · 김재운 · 김진표 · 신장용 · 백재현 · 우원식 · 정성호 · 이윤석 · 김경협 의원 발의)(계속)	6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 · 김동철 · 김재운 · 김춘진 · 김현미 · 문병호 · 박민수 · 박원석 · 박인숙 · 박홍근 · 배기운 · 백재현 · 우원식 · 원	

혜영·유대운·윤관석·은수미·인재근·전정희·정성호·정진후·최동익·최민희·홍종학·홍영표 의원 발의)(계속) 6

1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1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주영순·이완영·이현재·한기호·김성찬·윤명희·정성호·이만우·김을동·김세연·정희수 의원 발의)(계속) 7

1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수미·최봉홍·김성주·신경민·한정애·장하나·홍종학·홍영표·김용익·김성곤 의원 발의)(계속) 7

1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김동철·이상민·유대운·오제세·홍종학·유성엽·최규성·우윤근·김재운 의원 발의)(계속) 7

2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조해진·윤명희·서용교·홍지만·최봉홍·이종훈·김성태·김영우·김을동·이재영 의원 발의)(계속) 7

2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박성호·신성범·김한표·류지영·조원진·여상규·정희수·은수미·윤명희·박창식·강은희·송영근 의원 발의)(계속) 7

2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7

24.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7

25.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정희수·이만우·박창식·송영근·김을동·강은희·김세연·정갑윤·신성범·여상규 의원 발의)(계속) 7

26.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이목희·이찬열·은수미·이미경·한정애·장하나·진성준·강동원·정청래·이윤석 의원 발의)(계속) 7

2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2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계속) 7

2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계속) 7

 ○ 축조심사 생략의 건 9

3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5

3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강기정·이석현·강창일·김동철·양승조·백재현·안규백·오제세·박주선 의원 발의)(계속) 15

3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오제세·김을동·강석호·정의화·김춘진·김태흠·박완주·강기윤·정희수 의원 발의)(계속) 15

3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이한성·김성찬·김정록·남경필·최동익·문정림·신경림·이재영·홍일표·박창식·유재중 의원 발의)(계속) 15

3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김명연·김성태·김한표·박대동·박성호·서용교·조원진·주영순·홍문표 의원 발의)(계속) 15

3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5

3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5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6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신계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37. 증인 고발의 건

○위원장 신계륜 먼저 위원님들께 회의에 앞서

양해를 한 가지 구하겠습니다.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지난번 MBC 청문회, 국정감사, 기타 특별위원회 때 출석하지 않은 증인 김재철에 대해서 고발의 건을 먼저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안건은 2012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두 번의 출석 요구와 한 번의 등

행명령을 거부하고 제10차 환경노동위원회에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MBC 장기과업 관련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김재철 MBC 사장을 우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려는 것입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와 같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13조, 제15조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MBC 김재철 사장은 국회의 국정감사 불출석의 죄뿐만 아니라 동행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국회 모욕의 죄와 또 동료 위원들의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에 서류제출 거부의 죄를 함께 포함해서 고발하겠습니다.

기타 고발장의 내용 등 고발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심사 완료한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등과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완료한 의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역시 소위에서 심사 완료한 고용노동부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등과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예산안(계속)

가. 환경부 소관

나. 기상청 소관

다. 고용노동부 소관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3. 201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가. 환경부 소관

(10시23분)

○위원장 신계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소관 2013년도 예산안·기상청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고용노동부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고용노동부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환경부 소관 201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대체

토론을 걸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마친 후 오늘 다시 상정된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나 의견 개진을 거쳐서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이신 홍영표 위원님 201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위원장 홍영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홍영표 위원장입니다.

먼저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예산심사소위원회의 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환경부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과 기상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2012년 11월 7일과 22일 두 차례의 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문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되어 편성된 저탄소차 협력금 부담금 수입 2760억 원과 저탄소차 지원사업 1515억 원은 관련 법률안의 시행 시기가 2015년으로 조정됨에 따라 2013년 예산을 전액 감액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지차 결손액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폐자원을 활용한 디자인리뉴얼센터 구축사업은 타당성 조사 결과가 미흡하고 사전준비가 부실하여 10억 원을 감액하였고,

셋째, 제주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과 단양 자원순환특화단지 구축사업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각각 4억 원, 10억 원의 예산을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에서 1억 5000만 원,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사업에서 1억 9000만 원, 낙동강청 수계관리사업에서 2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하수관거 정비에 915억 원,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에 623억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확충에 271억 원 등 환경기초시설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지자체 부담 감소를 위하여 총인처리시설 운영비 1818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2012년 완공되는 국립생태원 운영을 위해 100억 원을 증액하였고 무등산국립공원 신규 지정에 대비하여 차질 없는 공원관리를 위해 190억 원을 추가 조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 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한국환경공단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서는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1억 600만 원을 추가하고 석면피해구제기금 운용계획안에서는 기타운영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부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선진기상기술 개발사업에 45억 원, 기상업무지원기술 개발사업에 50억 원 등 기상기술 개발을 확대하도록 하고, 대구기상대의 기상과학체험관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70억 원, 지역기상담당관제 운영에 16억 5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부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과 기상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홍영표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박또박 글자를 잘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대체토론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아주 집중적인 검토분석 결과 예산 및 기금 액수를 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열성적으로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에서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에 따르면 환경부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일부 항목에 증액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출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제57조에 따라 정부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환경부장관,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예, 정부 측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환경부 소관 201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2013년도 예산안 등에 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결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조금 후에 환경부 소관 의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마친 다음에 일괄해서 인사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상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에 따르면 기상청 소관 2013

년도 예산안의 일부 항목에 증액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제57조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상청장,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신계륜** 예, 정부 측이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상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상청장 나오셔서 2013도 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결과 관련해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기상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상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 결과 당초 기상청이 제출한 세출예산안에서 국립기상연구소 이전에 따른 연구지원 등 신축에 93억 원,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 개발에 64억 원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총 406억 700만 원을 증액하여 의결해 주셨습니다.

기상청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상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기상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환경부 소관 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26건의 안건을 모두 일괄해서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김성찬·김정록·강창일·민홍철·이한성·안홍준·이만우·강은희·주영순 의원 발의)(계속)

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수미·장하나·신경민·김용익·홍영표·박원석·최동익·최민희·김경협·한정애 의원 발의)(계속)

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정희수·이만우·박창식·송영근·김을동·강은희·김세연·정갑윤·신성범·여상규 의원 발의)(계속)

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김태환·고희선·이만우·박창식·김현숙·신의진·나성린·손인춘·이병석 의원 발의)(계속)

9.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이만우·김춘진·李宰榮·김재원·김성찬·서용교·이종진·류지영·황진하 의원 발의)(계속)

10.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나성린·손인춘·은수미·이만우·홍지만·강기윤·송영근·최봉홍·주영순 의원 발의)(계속)

1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수미·장하나·신경민·김용익·홍영표·박원석·최동익·최민희·김경협·한정애 의원 발의)(계속)

1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최규성·김성곤·박지원·오제세·주승용·김우남·이윤석·백재현·정세균 의원 발의)(계속)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안규백·강창일·김재윤·김진표·신장용·백재현·우원식·정성호·이윤석·김경협 의원 발의)(계속)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김동철·김재윤·김춘진·김현미·문병호·박민수·박원석·박인숙·박홍근·배기운·백재현·우원식·원혜영·유대운·윤관석·은수미·인재근·전정희·정성호·정진후·최동익·최민희·홍종학·홍영표 의원 발의)(계속)

4.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

- 1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 1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주영순·이완영·이현재·한기호·김성찬·윤명희·정성호·이만우·김을동·김세연·정희수 의원 발의)(계속)
- 1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수미·최봉홍·김성주·신경민·한정애·장하나·홍종학·홍영표·김용익·김성곤 의원 발의)(계속)
- 1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김동철·이상민·유대운·오제세·홍종학·유성엽·최규성·우윤근·김재운 의원 발의)(계속)
- 2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조해진·윤명희·서용교·홍지만·최봉홍·이종훈·김성태·김영우·김을동·이재영 의원 발의)(계속)
- 2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박성호·신성범·김한표·류지영·조원진·여상규·정희수·은수미·윤명희·박창식·강은희·송영근 의원 발의)(계속)
- 2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4. 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5.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정희수·이만우·박창식·송영근·김을동·강은희·김세연·정갑윤·신성범·여상규 의원 발의)(계속)
- 26.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이목희·이찬열·은수미·이미경·한정애·장하나·진성준·강동원·정청래·이윤석 의원 발의)(계속)
- 2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계속)
- 2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계속)

(10시35분)

○위원장 신계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및 6항 은수미 의원·최봉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의사일정 제7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심재철 의원·이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의사일정 제11항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은수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15항 박기춘 의원·이찬열 의원·장하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의사일정 제16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최봉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제20항 은수미 의원·김우남 의원·조해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의사일정 제21항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최봉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정부가 제출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정부가 제출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6항 최봉홍 의원·홍영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의사일정 제27항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2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김성태 위원님 나오셔서 26건의 환경부 소관 의안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성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김성태 위원장입니다.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사항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21건의 안전을 심사 완료하였고, 기타 법률안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에서 의결된 21건의 안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항공기와 선박 등을 제외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의무 부과는 과도한 것으로 보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은수미 의원·최봉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은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하고 등록말소 시 장치를 반납토록 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과 부담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2015년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먹는샘물 등의 제조는 국민의 먹는물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제조업 허가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재철 의원·이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은 소음·진동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 도입, 휴대용 음향기의 최고음량제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은수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와 천연가스자동차의 경우에는 등록말소 시 장치를 반납하는 규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박기춘 의원·이찬열 의원·장하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최봉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야생 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시 지원 및 보상은 필요한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은수미 의원·김우남 의원·조해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최봉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활용가능자원특별회계 설치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유통센터 설립 시 개정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전자 제품 재활용공제조합을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의 과징금 부과·징수 등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경우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보건센터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의 중단·감액뿐만 아니라 증액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최봉홍 의원·홍영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생태관광인증제도 시행 시 환경부장관을 공동인증기관으로 하는 등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명확히 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생태계보전협력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경우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되는 환경의 보전·개선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으므로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는 규정의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김성태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입니다마는 그 가운데도 심도 있게 법률안·의안을 검토해 주신 법안소위원장님과 심사에 열심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0시41분)

○**위원장 신계륜** 상정한 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 생략의 건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24건의 법률안 모두 소위 심사과정에서도 축조심사 형태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본문규정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제27항까지의 안전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각 안전에 대해서 의결할 때 이견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은수미 의원·최봉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대신 의사일정 제7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 심재철 의원과 이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신에 의사일정 제11항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은수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제15항 박기춘 의원·이찬열 의원·장하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의사일정 제16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최봉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제20항 은수미 의원·김우남 의원·조해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신에 의사일정 제21항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최봉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정부가 제출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정부가 제출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및 26항 최봉홍 의원·홍영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이상 2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신에 의사일정 제27항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안건에 대한 체계 및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오늘 의결한 2013년도 예산안 및 법안 등과 관련해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존경하는 신계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2013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과 4대강 수계관리기금 및 석면피해구제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환경부 소관 12개 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하수관거 정비 915억 원 등 7756억 원을 증액하고, 저탄소차 협력금 1515억 원 등 1557억 원을 감액하여 정부가 제출한 5조 2250억 원에서 6199억 원이 증가한 5조 8449억 원으로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대강 수계기금 운용계획안은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8666억 원으로, 석면피해구제기금 운용계획안은 900만 원이 감액된 320억 원으로 의결해 주셨습니다.

환경부는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의결하여 주신 사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환경복지 증진과 다음세대 미래환경 대비를 위한 환경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환경부 소관 12개 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건강양향평가 제도의 일몰제가 폐지됨으로써 개발 사업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의 지속적인 시행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생태·경관 보전지역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그 생태적 우수성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고, 생태관광지정제의 도입으로 환경교육의 살아 있는 체험장인

생태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는 4대강 수변구역의 환경오염 행위를 가중처벌하여 상수원의 수질 보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중·대형차 위주의 자동차 소비문화를 저탄소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정부 보조를 받아 구입한 저공해 자동차의 철저한 사후관리 수단들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으로는 국가가 체계적으로 소음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가전제품 저소음 표시제를 통해 국민들이 소음이 적은 가전제품을 선택하여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먹는물관리법 개정으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의 위생관리가 강화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정수기 물을 마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선진적인 환경행정의 추진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13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기금운용계획안과 법안의 심의 의결을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심사가 좀 늦어져서 미안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과 법률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회의장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계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용노동부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법률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이신 홍영표 위원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홍영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홍영표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23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의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사업은 MBA 2개 과정을 1개 과정으로 축소하여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제도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산출 내역을 수정한 결과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첫째,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공동형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예산 25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핵심직무역량평가 모델 개발 및 보급 사업은 기업에 평가모델을 보급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한국폴리텍대학 운영 지원사업은 경북 영천캠퍼스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취약근로자근로조건 보호사업은 최저임금 및 서면근로계약 관련 교육·홍보 등을 위해 7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고용상차별개선 지원사업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섯째, 모성보호육아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을 10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고용보험기금의 증액 사업입니다.

첫째,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사업은 동절기 등 조업불가 시 건설일용근로자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39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비정규직 재고용 시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을 19억 7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은 공공어린이집에 대한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45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재기금, 임채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산재기금과 관련하여 근로자건강센터를 확대 설치하기 위해 10억 원, 근로복지공단 의료사업인력 40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를 각각 25억 4400만 원, 13억 4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임채기금과 관련하여 체당금조력 지원사업은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1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근로복지진흥기금과 관련하여 낙후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의 CCTV 설치와 창호 교체를 위해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고용영향평가 시 사전·사후 관리 및 평가체계 마련,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 표준사업장에 근무하는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등을 정부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의 증감액 소요를 반영하면 2013년도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은 137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은 5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이 100억 원, 지출은 110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은 48억 9200만 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은 1억 8800만 원, 근로복지진흥기금은 2억 7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홍영표 소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대체토론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매일 사업마다 집중적으로 검토·분석하여서 예산·기금 액수를 조정한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성적으로 심사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에서 오늘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계륜 예, 이완영 위원님!

○한정애 위원 제가 먼저 손들었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아, 그랬습니까? 제가 못 봤습니다.

여성 먼저입니다. 먼저 하십시오.

○한정애 위원 위원장님, 이쪽도 가끔 좀 봐 주십시오.

○위원장 신계륜 죄송합니다.

○한정애 위원 예산소위에서 이미 말이 되었고 대체토론이 일정 부분 진행됐습니다만 조금 세부적으로 토론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업무의 공공적 관리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불법 민간위탁, 재위탁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불법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지원 중단을 요구합니다.

지난번 국감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에 법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시행령을 개정해서 시행령에 근거해서 올해부터 상시자격검정 12종목에 대해서 연간 검정 인원 110만 명에 해당되는 검정업무를 민간기관이자 노동부 퇴직 관료, 산업인력공단 퇴직 간부들이 중심이 된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기술자격검정원에 지원된 금액이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가 40억 원에 해당되고요. 월단위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검정시행 및 검정관리비에 약 80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도 역시 월 단위 교부 및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국회에서 문제 제기하니까 2012년 7월에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제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국회가 노동부가 불법을 저지르고 그 뒤처리를 해 주는 기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서 2013년 예산안에 기술자격검정원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를 22.5% 증액한 49억 원을 또 편성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검정시행 및 검정관리비는 전체 종목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직접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술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검정시행과 검정관리비를 공단이 직접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기술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2013년 예산안 중에서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49억 원은 전액 삭감하되 한국산업인력공단 예산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 및 검정관리비는 전액 공단이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로 정리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면 주무부 장관은 물론 국가기술자격검정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작년에 고용노동부가 임의로 변경을 한 것이지요—여기에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및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및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은 요건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해당되는 요건 중에 하나 '비영리법인일 것', 이것 하나만 갖추고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실시를 위한 조직·인력·시설·장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비와 시설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와 시설을 산업인력공단의 장비와 시설을 그대로 준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불법적인 민간위탁,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내 불법 하도급의 형태

입니다.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의 직원들이 인력공단의 지사에 같이 근무를 하면서 인력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장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검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계획대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가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신계륜** 예, 답변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우선 한정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불법위탁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법령상 근거가 확실하게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심의를 해서 자격과 요건을 갖춘 기관에다가 재위탁한 것이고, 한정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모든 자격검정을 산업인력공단이 모두, 단순한 업무까지 직접 집행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데 그것은 업무의 효과적인, 전문적인 수행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제기준이라든지 핵심업무에 인력공단이 집중을 하고 단순한 집행 문제는 거들어줄 수 있는 기관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국가기술자격의 수준을 높이고 민원인 접근성도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행 소위에서 심의한 그대로, 원안대로 심의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정에 위원**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장관의 발언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요.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시면서 현장성, 효용성 그다음에 민원인 접근성을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기술자격검정원으로 업무가 재위탁되고 난 뒤에 현장성이 떨어지고 있고 효용성에도 문제가 있었으며 민원 접근성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남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인력공단에서 실시했을 때는 현장에 나와서 실시하던 것이 그것이 없어지는 바람에 오히려 더 멀리까지 사람들이 시험을 치러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 효용성 면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난 뒤에 1부 시험문제지, 2부 시험문제지 똑같은 것을 출제한 경우도 있는데 이게 효용성이 좋은 것입니까? 전혀 효용성이 맞지도 않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사실은 이것을 다른 기관에 다시 위탁을 하기 위한 것을 해야 됩니다

마는 올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술자격검정원에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영구적인 사실은 노동부 퇴직관료를 위한 기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께서 하신 발언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도 전혀 맞지 아니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약간 소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노동부 산재담당 과장을 역임한 바도 있는데요.

지금 산재장애인단체에서, 조기에 산재환자를 퇴원시켜서 직업 재활하는 사업을 제가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위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가 안 돼 가지고 제가 이번 산재기금에 4억 반영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실제로 취업의 경우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취업 지원서비스도 하고 있는 차원이고 또 복지공단에서 우리 산재환자를 조기에 퇴원시키려고 하지만 관에 대한 반발로 못 합니다.

해서 이런 장애인단체가 공감할 수 있는 조기 퇴원을 통한 직업재활, 제가 나눠 드린 자료 4페이지 보시면 성공한 산재환자의 멘토들이 직접 병원에 가서 이 사람들을 재활시켜서 조기에 직업 복귀시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 사업은 4억밖에 안 되지만 보험재정에는 10배, 20배 이상 보험재정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좀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이것도 정부 측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4억 증액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재환자들이 근본적으로는 조기에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력이 좀 못 미치는 부분도 있고 또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재활을 경험한, 조기에 복귀한 선배들이 얘기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봐서 이완영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규모에 대해서는 심의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예, 은수미 위원도 발언하십시오.

○**은수미 위원** 예산소위 때 그 문제를 검토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근로복지공단하고 중복될 뿐만 아니라 사실 자칫 잘못하면 또다시 이것이 위탁 사업과 같은 형태로 될 거라고 해서 일단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재론을 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완영 위원** 우리 소위원장님, 김성태 위원님, 소위에서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반영 안 한다고 결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은수미 위원** 그 부분을 저희는 반대를 했습니다.

○**이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심의를 안 한 것으로 제가……

○**은수미 위원** 아니요, 논의를 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은수미 위원님 반대하시면 여기서 어렵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이 좀 협조를 해 주시면 우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위원님 여러분, 물론 시간이 짧기는 하지만 소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올라온 안이고 합의해서 올라온 안이기 때문에, 몇 분이 지금 이론도 있고 이론 제기한 게 일부는 타당하기도 하고 시간이 더 있으면 충분히 더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어려운 과정에서 소위원회가 나름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문제 제기를 기록해 두고 저는 위원회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얘기 계신가요?

예, 이종훈 위원님!

○**이종훈 위원** 항목은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에서 교육사업이 MBA 2개 과정을 1개 과정으로 축소해서 3억 50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기업원이 앞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두 가지 점에서 꼭 필요한 게 질 높은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 점,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자체 수익성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전략적이고 기획적인 경영을 해야 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의를 갖고 사회적기업에 참여하

시는 분들의 경영능력을 교육시키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첫 회지만 어떤 이런 교육과정을 서로 여러 개를 해서 비교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하게 하려면 예산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굳이 감액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한정에 위원님 발언하신 내용도 그전에 국감 때 발언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해서 귀담아들을 내용이 있고 또 이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귀담아들을 대목이 있고 또 이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참고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것을 액수를 다시 조정하게 되면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결위 넘기는 그 항목에다가 세 분의 의견을 이런 의견이 있었음을 첨부하고 명기해서 예결위 소위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지요?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부 항목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제57조에 따라서 정부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노동부장관,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정부 측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용노동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 분 위원님의 의견은 그 의견을 첨부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용노동부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환경부·기상청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등 관련하여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우리 위원회에 동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위원장과 간사들이 협의해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2013년도 예산안 등에 관한 우리 위원회 의결과 관련해서 인사말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이어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마친 다음에 일괄해서 인사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모두 7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3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3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강기정·이석현·강창일·김동철·양승조·백재현·안규백·오제세·박주선 의원 발의)(계속)

3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오제세·김음동·강석호·정의화·김춘진·김태흠·박완주·강기윤·정희수 의원 발의)(계속)

3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이한성·김성찬·김정록·남경필·최동익·문정림·신경림·이재영·홍일표·박창식·유재중 의원 발의)(계속)

3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김명연·김성태·김한표·박대동·박성효·서용교·조원진·주영순·홍문표 의원 발의)(계속)

3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3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1시28분)

○**위원장 신계륜** 의사일정 제30항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3항까지 장병완 의원·이명수 의원·안홍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성태 위원님 나오셔서 7건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성태** 법안심사소위원회 김성태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1일 고용노동부차관 등 정부 관계자를 출석시켜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사항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7건을 심사 완료하였고 그 밖의 안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에서 의결된 7건의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이한구 의원·박지원 의원·심상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 결과 각 개정안의 내용 일부를 반영하여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3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영역을 임금 외에 상여금, 성과금, 복리후생사항 등으로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장병완 의원·이명수 의원·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거나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이미 의결된 점 등을 고려하여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휴업·휴직근로자 지원요건을 분명하게 규정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자 부칙에 특례조항을 신설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윤영석 의원·오제세 의원·장병완 의

원·김동철 의원·김태원 의원·김관영 의원·박남춘 의원·윤관석 의원·장하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 결과 각 개정안의 내용 일부를 반영하여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9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되 2014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 결과 개정안의 내용 일부를 반영하여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해당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김성태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쁜 가운데에도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많은 법안이 나왔으면 좋았겠습니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1시32분)

○**위원장 신계륜** 상정한 안건을 본격적으로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 생략의 건을 처리합니다.

오늘 심사하는 7건 모두 일부개정법률안들이고 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축조심사 형태로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러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58조제5항 본문규정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6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해서 의결

이 있을 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부터 33항까지 장병완 의원·이명수 의원·안홍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안건들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회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오늘 의결한 2013년도 예산안 및 법안 통과 등과 관련해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오늘 고용노동부 소

관 2013회계연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및 법안소위에서 각각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예산안과 법률안의 사회적 영향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세심하게 지적하고 보완해 주신 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 중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열린고용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 중 고용보험법 개정안 및 관련 예산을 통해서 경영사정의 악화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고용유지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기간제법 개정안 및 파견법 개정안은 차별적 처우금지 대상을 상여금, 경영성과금 및 복리후생사항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지난 8월 시행된 차별적 처우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시정요구제도와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염려하는 위원님들의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업무량과 관계 없이 매년 정원의 3%씩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인데, 말하자면 신규로 채용하는 인원의 일정비율을 청년으로 뽑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정원의 일정비율씩 뽑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서 이것은 공공기관의 방만화로 인한 효율성 저해가 우려되고 청년들의 공공기관 쏠림 현상 심화, 중장년층·장애인의 고용 감소 등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어서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용노동부는 오늘 의결하여 주신 예산·기금안과 대부분의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공감하는 고용노동정책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고용노동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니다.

청년고용과 관련해서 좀 걱정이 많으시군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자, 오늘 회의를 마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아마 위원회가 열린 관계로 우리 민주당에서 두 분의 위원이 발언신청을 했고, 새누리당에서는 발언 혹시 신청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장하나 위원님과 은수미 위원님이 잠깐 발언을 하시고, 회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장하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장하나 위원입니다.

방금 또 청년고용에 대한 말씀을 장관님께서도 해 주시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걱정하는 말씀을 해 주셔서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관께서는 청년고용의 문제에 그렇게 적극적인 이런 말씀은 늘 하지 않고 계셔서 좀 우려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전체회의에 앞서서 오전 9시 반에 청년유니온 그리고 경제민주화2030연대 그리고 서울청년네트워크와 함께 청년을 위한 경제민주화법 그리고 환노위에서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노조법도 그렇고요. 또 그다음에 최저임금법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극심한 청년 문제와 연관이 있으며 정말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청년의 문제를 화두로 잡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법안조차 회기 내에 통과시키지 못하면 그 진정성을 우리 청년들이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까지 갖고 이 자리에 또 이 방청석에 환노위에서 이런 법안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청년들이 직접 보고 싶다 하여 같이 올라와 앉아 있습니다.

일단 최저임금법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200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최저임금 그리고 그 이하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임금의 마지노선이 아니라 사실 청년들의 평균임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청년들의 피폐한 삶이 나아질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저희의 요구이고 사실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방금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인데요.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 기존의 어떤 노력조항이 임의조

항으로 바뀌는 개정안이 오늘 통과되었습니다. 뭐 그만 해도 다행이지만 사실상 정원 300명 그리고 연매출 1000억 원 이상의 대기업도 이런 같은 의무조항을 따라야 한다는 조치가 있지 않고서는 사실상 여야가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는 향후 5년간에 수십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런 안을 실현시킬 만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공약을 바꾸든지 아니면 현재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한 청고법을 통과시키든지 둘 중의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닌 일자리 창출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사 하는 이런 바람을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노조법입니다.

지금 구직자, 실업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 못 받고 있어서 청년유니온이 지금 서울 등등 지자체에는 설립신고가 받아들인 상태인데 사실은 노동부로부터 계속 설립신고가 반려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구직자도 미래의 어떤 이후에 사용자에 대해서 채용 조건 등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판례가 있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청년들이 그냥 구직자, 실업자이고 소위 백수로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라든가 다종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직노동자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법 개정을 통해서 구직자, 실업자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 청년들의,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청년들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환노위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외면하지 마시고 받아들여 주십사 하는 게 저의 요구이고요.

또 하나는 대선을 앞두고 청년이라는 두 글자가 그냥 이용만 되고 지나가는 게 아니었으면 하는 게 저의 목소리입니다.

이 점을 강조드리고 가능하다면 본 회기 내에 법안심사소위가 다시 열려서 이런 청년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동관계법이 다시 논의되고 좀 조속히 처리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은수미 위원 발언하십시오.

○**은수미 위원** 첫 번째로 지난번에 쌍용차소위,

그러니까 국정조사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어렵게 됐고요. 그리고 쌍용차소위에 대한 요구도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노위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할 것인지, 저는 오늘 의결을 하든가 아니면 도저히 오늘 어려우면 특별회의라도 소집해서 쌍용차소위를 의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은 고용부장관께서 잠깐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고용부장관께서 얼마 전에 울산 노사민정 간담회에서 불법과건과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를 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고용부장관의 불법과건 해결을 위한 의지가 굉장히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현재 사건이, 이것에 대한 조사사건이 진행된 지 2년이 넘게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알기로 이렇게 고발사건 처리기간이, 그러니까 통상적인 고용노동부의 고발사건 처리기간보다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말로만 불법행위 엄단이라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신문기사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는 이유가 검찰 때문입니까, 아니면 고용부 때문입니까? 이게 좀 저는 애매해서, 사실은 어디에 원인이 있어서 2년이 넘게 고발사건 자체가 처리가 안 됐는지 하는 것 하고요.

또 하나가 울산지역 노사민정 간담회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고용부장관께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하시겠다는 발언을 하신 것으로 지금 보도자료가 나오는데 '고용의무조치'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현재 고용노동부가 불법과건에 대해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업체폐쇄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고용의무조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실은 법안소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최저임금법이나 그다음에 노조법 제2조에 특고나 구직자, 실직자에게 노동자성을 부여하는 이런 문제가 좀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법안소위의 조속한 재개최를 촉구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발언 다하셨나요?

○은수미 위원 예.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새누리당 위원님께서 발언하시고 싶으신 분 짧게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홍 위원 법안소위나 예산소위 하는 데 여러 가지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기해서 제가 한번 제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안소위에서 다뤄왔지만 특고 문제나 사용자성, 근로자성 문제는 노사정이 같이 공통으로 대승적인 합의를 이루어야 법안 개정이 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특히 사용자 개념 확대나 간접고용, 직접고용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청년고용, 청년유니온 역시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지금 경제인단체에서는 사용자 개념을 다소 확대는 해 줘야 하면서도 그 뒤에 돌아올 후유증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환노위에서 오히려 결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사용자 개념과 근로자 개념에 있어 가지고는 이것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부가 주관이 돼서 노사정위에 엮든지 해서 거기서 사회적인 합의를 유도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하나 제출했으면 싶은 게 의견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합의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동법 전반적인 문제를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노총이나 노동계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지금 대선 공약에서 민주당은 전부 다 오케이를 해 났고 새누리당은 바꾸어 가지고 몇 개는 되고 몇 개는 안 되고, 이제 물러섰습니다만 안철수 후보 역시 그 진영 측에서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이렇게 답을 내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국민들에게 오도됨으로 인해서 무조건 다 된다, 쉽게 노동법을 아는 사람이 생각해 볼 때는 무조건 다 된다는 것은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이고, 중간에 바꾼다는 얘기는 어디까지 들어줄 것이냐 하는데 이것을 대선과정에서 인기영합주의로 혼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환노위로서는 오히려 이 기회에 정부로 하여금 노사정위원회에 엮어 가지고 학계와 노사가 같이 앉아 가지고 사용자 개념과 근로자 개념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고맙습니다.

하실 말씀이 무척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반 문제는 아마 민주당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새누리당 위원님들도 내용적으로는 공감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그 방법과 시기를 못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리고 은수미 위원님 말씀하신 쌍용차 문제는 정식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국정조사 요구를 정식으로 박지원 대표가 원내대표인 이한구 대표에게 했습니다. 이한구 대표가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 매듭짓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인지 문제는 남아 있는 문제고요.

또 지금 은수미 위원님께서 제안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소위를 만들어서 문제 해결에 접근해 가면 어떻겠는가라는 제안인데 그 제안은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숙고하셔서 그것이 필요한 일이라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논의가 좀더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국정조사 문제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소위 부분은 말하자면 국정조사 다음에 이야기가 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장관님께 하나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KBS 연기자들이 임금을 체불했다고 해서 많이 싸우고 지금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안을 좀 파악해 주십시오. 이게 임금인가, 임금이 아닌가부터 논쟁이 있어서 노동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노동부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또 외주든 드라마 제작 사업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지금 정상적인 외주가 되고 있는가, 불법적인 외주가 되고 있는가, 근로감독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고 앞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자세히 조사해서 저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구체적인 실태를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조치하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아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MBC 이상으로 큰 문제로 흐를 소지가 있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위원장님, 현대자동차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고용노동부장관께 아까……

○**위원장 신계륜** 은수미 위원이 질의한 현대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똑바로 해 주십시오. 지금 보고를 안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저한테 답변할 기회도 안 주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불법과건 관련된 직접고용을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가서 노사민정 위원들과 간담회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우선 법적인 쟁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론이 안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특별협의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소기의 효과를 거두는 것도 효과적이라 나름대로 의미가 크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회사가 밝힌 시한과 인원도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은 인원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하고 그와 관련해서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고 할 수 있는 기준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을 2015년까지라고 했습니다마는 더 많은 인원을 그 이전에 출발하도록 이렇게 추구를 했고 동시에 조합원이거나 해고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다는 제안도 했고, 그동안의 근무 경험도 합리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노조나 지회로 하여금 무엇이 과연 진정으로 조합원을 위하는 길인가도 함께 고민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특별협약이 세 차례 있었습니다마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특별협약을 통해서 나름대로 성과물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적당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두 가지 다른 것이었는데……

○**이완영 위원** 발언권 받고 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검찰 고발사건입니다.

○은수미 위원 아니, 왜 지연되는가……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검찰 고발사건입니다.

○은수미 위원 지연되는 원인이 지금 그러니까 검찰 때문이라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검찰 고발사건입니다.

○은수미 위원 무슨 의미냐는 것이지요. 검찰 때문에 그러면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런데 그게 통상적으로 보통 1년 정도인데 왜 2년 이상 되는 동안 왜 아무것도……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사건에 따라서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다음에 직접고용의무 조치는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가 방금 답변드린 것으로 같음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러면 직접고용의무 조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적당한 때가 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나중에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장관님, 아까 KBS 문제는 심각합니다. 지금 단협 위반…… 그리고 노동부에 고소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부가 응답을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고소가 돼 있습니까?

○위원장 신계륜 고소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파악하겠고요.

한 말씀 더 할 기회를 주시면……

○위원장 신계륜 예.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근로자 개념,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사회적 의제로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렇게 하십시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노동부 남부지청에 고발돼 있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 조사하십시오. 그 내용을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위원장 신계륜 위원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

리 위원회가 그래도 민생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다소나마 법안을, 얼마 되지는 않지만 합의한 것을 높게 평가하고 예산도 심사해 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고용노동부장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심사가 늦어져서 위원장으로서 미안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김 경 험	김 성 태	신 계 른	은 수 미
이 완 영	이 종 훈	장 하 나	최 봉 홍
한 명 숙	한 정 애	홍 영 표	

○청가 위원(1인)

주 영 순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천 병 호
전 문 위 원	이 동 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환경부				
장	관	유 영 숙		
차	관	윤 종 수		
기 획 조 정 실 장		정 연 만		
환 경 정 책 실 장		송 재 용		
물 환 경 정 책 국 장		이 정 섭		
자 연 보 전 국 장		백 규 석		
자 원 순 환 국 장		최 흥 진		
녹 색 환 경 정 책 관		이 찬 희		
기 후 대 기 정 책 관		박 천 규		
상 하 수 도 정 책 관		김 진 석		
국 제 협 력 관		유 연 철		
수 도 권 대 기 환 경 청 장		이 희 철		
고용노동부				
장	관	이 채 필		
차	관	이 재 갑		
기 획 조 정 실 장		전 운 배		
고 용 정 책 실 장		한 창 훈		
노 동 정 책 실 장		조 재 정		
노 동 시 장 정 책 관		이 재 홍		
근 로 개 선 정 책 관		이 태 희		
직 업 능 력 정 책 관		박 성 희		
고 용 평 등 정 책 관		신 기 창		
고 용 서 비 스 정 책 관		정 지 원		

인력수급정책관	박	종	길
산재예방보상정책관	문	기	섭
노사협력정책관	권	혁	태
공공노사정책관	시	민	석
정책기획관	김	재	훈
국제협력관	안	경	덕
대변인	김	경	선
감사관	황	보	국
기상청장	조	석	준